

사단법인 일일시호일 정기총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23년 04월 12일 오후 5시

2. 회의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부평국로 45-11 동진불교대학 2층

3. 참석자 : 회원 32명 중 43명 참석

4. 의제

제1호 의안 : 2020년 결산 보고(감사 보고)

제2호 의안 : 2021년 사업계획

제3호 의안 : 2021년 예산

제4호 의안 : 정관개정

5. 회의 내용

발언자	회의 진행 사항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일시호일 사무국장을 칭하는데입니다. 현재 회원 32명 중 43명 출석으로, 총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오른다(5기)장기회 회장께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 역시 활동에 대한 책임이 확장된 분들입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총회를 4월에 열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접 참석하시기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회답장으로 대신해주세요. 회장 참여까지 포함해 이렇게나마 총회를 열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되면서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회사회의 안전으로, 지난 2020년도에 진행한 질병차조법 결산 확인과 건강 철학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결산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사후국장 보고 후 진행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 : 2020년 결산 보고(감사보고)

경산보고는 제주해드란 가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한 해 동안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원년도 이월금까지 총 180,891,442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웃돕기 지원이 47,000,000원입니다. 또 다른화가정 지원은 기본세 진행해왔던 미스터, 청룡다문화가정, 경상다문화가정, 규진구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2020년 새롭게 강남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각 지역에서 코로나19로 활동이 하루되면서 운영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 다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 총 25,250,000원이 다른화가정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광고총트비 5,000,000원과 풍물 5,041,500원 차액했습니다만 광고제작비가 증명 및 e-mail 분실 등의 필요로 운영경비가 3,352,345원이었습니다. 또 배달 한건비 1,500,000원이 사용돼 총 18,000,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총 98,643,845원 기준였고, 62,247,597원이 이용됐습니다. 이 이용금액은 기본자산 25,081,971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2020년 사업은 지금 사무국장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논의에 앞서 감사님의 감사보고와 먼저 일겠습니다. 남수연 감사님께서 감사결과를 보드파이낸셜입니다.

남수연

감사는 2월 2일 오후3시 열린사무국에서 진행했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무국의 업무처리에 이상이 있었고, 수입과 지출 또한 정확하게 구분해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감사는 일일시호장의 2020년 사업 및 수입 기준을 회계에 있어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된 영향으로 수입이 소폭 줄었고, 다른화가정에 대한 지원활동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듯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극복하고 활동이 조금 더 활기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선

남수연 감사님의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회계 여러분들께서 2020년 결산보고와 관련해 의견 있으시면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일동

(별도의 감사성이 없음을 밝힌다)

심정선

특별히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2020년 결산 보고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찬성입니다.

회원사	제작합니다.
운영일	설정됩니다.
설정설	설정까지 나왔습니다. 이곳으로 첫 관계 안전한 2020년 결산 보고안은 원인 등 자료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안전을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은 2021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해 사무국에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대	<p>제2호: 비안: 2021년 사업계획</p> <p>2021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노동자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품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위탁운영 참여에 대해 차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p> <p>첫 번째로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과 동일하게 대체 한 사람의 이주노동자를 선정해서 맘전 카트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시행된 것은 물론, 지난해 표준나19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신규로 선정하는 기관 또는 시장 등과 공동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p> <p>세 번째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본 방안 확보를 위한 디자인과의 협주합약 확대와 광고 충분사업입니다. 또 다문화불교연합회와 국제인 교류로 활동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멀리신문 기관과 인터넷 플랫폼 상호 협의 회의, 퍼스한국 비용으로 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p> <p>네 번째는 건강가정다문화기록지원센터 위탁운영 참여입니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행정포함건강가정다문화기록기원센터에 대한 운영자원단체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외 온라인 1개 세미ナー 계급 위탁운영하기 위해 기관 운영법인들과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p>
설정설	사무국장이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계획은 이사회는 회사를 거쳐 안전으로 설정됐고, 법인이 진행하는 목적사업이 무엇하게 대해서 초기 목표로 특정한 사업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 설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주제의	이주노동자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품보 등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위탁운영은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정설	본 발언은 2019년에 8개 국가에서 총 9개 공동체가 전합해서 만족한

	<p>한국디문화문화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주도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아동들이 성장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수립하고 있고, 지원센터 비판을 통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p> <p>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위탁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개인들과 직접 편지를 보내면서 살피고 있고, 세워파 관련 공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원센터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례종류지와 단과 논의를 거쳐 공동모금장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지원단체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부분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이월금에 포함해 준비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마동방	<p> 일단 한곳에 운영지원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성과라고 봅니다. 그 외에 다른社会组织와 협력은 물론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위탁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다같이 공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는 없어드릴 것 같습니다.</p>
신정경	<p> 다른 곳들 말씀도 들었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최진민동	(여기 말씀을 막습니다)
설경협	<p> 네. 더 이상 의견 없으신 걸 감습니다. 그럼 2021년 사업계획안을 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세현기	전입니다.
황경일	개찰입니다.
고지희	살펴봅니다.
심재숙	<p> 반정까지 나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안건인 2021년 사업계획안은 끝인 듯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의견은 언제든 말씀주시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p> <p>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2021년 사업계획에 따른 2021년 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p>
김현태	<p> 제3호의안: 2021년 예산</p> <p> 2021년 사업·제출파 관련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비, 후원금, 기부금과 전기 이월금을 포함해 총 182,347,597원입니다. 세입의 근거는 최근 3년간</p>

회비와 cmc 후원금을 기준으로 했고, 전년도 예산안과 정산한 금액입니다.
제출은 원안 통과해 주신 2021년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수도동자 관련 사업비 지출은 철1인 300만원, 차량을 기준으로 36,000,000원을 책정했고,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및 세월비 등 지원 사업은 총 55,000,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인식개선 홍보사업은 민족연대 협회와 업무협약 계약, cmc 후원자 확보 홍보사업 등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충분한 5,000,000원 예산을 책정했고, 광고 홍보비용으로 5,000,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당시는 피부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비단운영비 사업로 지원을 받았던 일관 등을 포함해 30,000,000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원관비는 총 1,500,000원 해 1년 18,000,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외 흥미어치 관리 및 cmn유기의 관리비용, 그리고 원관관련비 등은 2020년 결산에 옮겨서 편성했습니다.

설정설

지금까지 2021년 예산안 편성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자료에 따르면 예산안이 자체적 기록과 있습니다. 차운이 말씀하시거나, 최근 학교기관 말씀해 드시기 바랍니다.

변경요

예산안 편성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과 지원 인력비의 계상적인 차별화 가능성에 따른 수입이 더 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성규(의사)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 개인 설립 초기에 비해 많이 늘었지만, 아직 그다지 민족별 성향은 아닙니다. 병안이 확장, 병원도 넓하고 비 높은 일들을 하자면 기관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충은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회장님들께서도 후원과 회내에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주현

그때도 예산을 알차게 사용하고 있는 사무국과 지원을 잘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업무선분에 감사드리며, 한 걸 ~~걸~~ ~~걸~~ ~~걸~~ ~~걸~~ 노력을 축하드립니다.

설정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사일반 정상을 이해하신 가운데서도 조용적으로 사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원들과 사무국도 써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끼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2021년 예산안에 대한 논

	비를 빠져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기 있으십니까?
회원인증	(회원의 접속을 위하여)
설명설	그리면 2021년 예산안은 원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수	들리합니다.
비금호	제출입니다.
검증보	설정입니다.
정보설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새 번째 임관인 2021년 예산안도 원안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조 회의 : 정관변경 안	
미아시 대·원내·간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째 안건은 정관 개정입니다. 정관개정은 상후 건강가센터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의 폐지와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세사의 충원과 확대를 승인하도록 이들이 같은 저부위 평소성이 예상되며 따라 거부개정과 이에 따른 평화구 성장을 지원에서 대체원으로 변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업무신설로 예전토 사무실을 평화구동에서 일부 받아 운영했는지, 4월25일자로 같은 건물 같은 주소 1527호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됐기에 주소가 변경되었고 정관 개정에 포함했습니다. 우선 사무국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제	정관변경안 신규래비표를 환호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1조(소개) 본 회의 주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A동 1501호(종로1가, 트레이에프 종로타운)에 있다.”에 “제23조(주관) 본 회의 주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A동 1527호(종로1가, 트레이에프 종로타운)에 있다.” 그리고 본 회의 주관하는 사업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본사무소(기부)를 두어 그 소재지는 다음 자료와 같다. 1. 경기서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월로 233번길 28(조원동 29) 트레이에프 2. 경상지부 : 부산광역시 광구로 63번길 16(성당동 2층) 또한 주기로 필요할 경우 본사무소(기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1조(회원의 멤버) 모든 회원은 본회에 가입하여 법인의 활

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 선거권과 과정개입권을 가진다. 또한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활동방법에 참여할 권리도 가진다”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자

“제2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활동방법에 참여할 권리도 가진다”로 연결됩니다.

이어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원 회고화를기준하여 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를

“제3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고화를기준하여 제25조 2.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로 연결합니다.

제20조의 [본회의원]

① 대의원은 본 회의원의 일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부별 총회가 관할 사항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으로 정된다.”

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제22조(총회소집의 규정) ① 총회 소집권자가 원회회기나 이를 기준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개최의사 과반수 또는 개최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를

“제22조(총회소집의 규정) ① 총회 소집권자가 원회회기나 이를 기준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개최의사 과반수 또는 개최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제23조(회계결정권) ① 총회는 회계 회원 과반수와 출석으로 회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전한다.”를

“제23조(회계결정권) ① 총회는 회계 대의원 과반수와 출석으로 회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전한다.”로 변경합니다.

또 “제23조(회계결정권) ② 총회의 회계원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23조(회계결정권) ② 총회의 회계원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이어서 “제42조(법인체산)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개최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회의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제42조(법인체산)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 개최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회의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

	<p>하여 주무관청에 접속하여의 한다.'로 변경합니다. 비례자료로 '제43조(정관변경)'의 청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족 세시 계류 기간 3년이 이상의 전상으로 의뢰하여 수무관청의 파기 를 받아야 한다'며 '제43조(정관변경)'의 청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족해서 비례 대비율 3분의 2 이상의 전상으로 의뢰하여 수무관청의 파기로 만족이 한다'로 변경합니다.</p> <p>이상과 같이 정관변경안을 보고합니다.</p>
심경섭	마상 개정하고자 하는 정관변경안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복잡한 것은 없고, 중요한 내용은 보다는 바빠 짧이 지부를 두는 것과, 충의 구성 권을 회원이 아니라 대의원으로 구상한다는 점에 혼동을 빚주고 있습 니다. 관련된 조항들이 예쁘게 있어서 조망명로 자구를 수거하다보니 모 고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정관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계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수	법률이 확장하고, 본래의 사업목적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지부를 두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 독립사업의 현황은 진정을 위해 대파별 제도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데도 불감합니다.
김은호	장기적으로 보면 활동 영역과 역할 확대를 위해서도 기관 추진하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공감합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에 특별한 문제 가 없어 보이는 쪽 어때요. 헌안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심경섭	회원님들 생활이 크게 다르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범	이 부분은 어려워 범동 것 같았습니다.
심경섭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회원발언	(회원이 일정을 밝히다) 
심경섭	그러면 정관개정안을 헌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호	동의합니다.

이동민	제법입니다.
김종민	살았습니다.
김정연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내 번역 안간민 정관재장안이 헌법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간재 대법 심판파 판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다려온 전이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일동	(기다려온) 박수를 표합니다)
김성식	여기서 퇴진이 없으면 오늘 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회에서는 2020년 예산보고, 2021년 사업계획, 2021년 예산안 이 헌법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또 정관재장안 역시 헌법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범위 에서 최소한은 성장을 맡을 수밖에 없었고,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활동을 활화하고 장기적인 역할 강화 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때에 이처럼 종회를 통해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퇴진을 규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활동해주신 여러분 모두 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코로나19가 조속히 진정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 사합니다.
	퇴진은 미흡으로써 충분 목적인 데만 전부의 성과를 충분히 막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합니다. (퇴진 종료시간 오후 5시)
	위 의사의 결의표명과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 하고 회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하다.

2021년 4월 12일

사단법인 일원시조일『영언진작』

회장 겸 대표권있는 이사 김 경 성 (인)

이사 김 영 규 (인)

이사 남 배 현 (인)

이사 이 개 현 (인)

이사 권 오 영 (인)

점관 변경안 신구 대비표

주제	정관별	기존	개정안	비교
1 제1장 총칙 제1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주 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도 15-8호 1527호(풍도1가), 트래디 션트 풍도타운에 있다. 그리고 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마포동 1501호(마포1가), 코웨이 빌딩 풍드타운)에 있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주 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도 15-8호 1527호(풍도1가), 트래디 션트 풍도타운에 있다. 그리고 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마포동 1501호(마포1가), 코웨이 빌딩 풍드타운)에 있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주 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도 15-8호 1501호(풍도1가), 코웨이 빌딩 풍드타운에 있다.	기존 정관에 개정안의 말 을 신 부분 번 집 및 추가 내용 1. 경기도부 : 경기도 수 원시 장안구 수원로 233 길 93(장안동 35) 보현 빌딩 2.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동구 고려로 63번길 1 보현빌딩 2층 본회 추가로 일상회 주요 부서별 소(자부)를 설치할 것이다.	기존 정관에 개정안의 말 을 신 부분 번 집 및 추가
2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권리)	제3조(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출입에 합당한 법인의 활동에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권리와 함께 회원으로 가진다. 또 한 회원은 본 법인의 운 영과 활동전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회원의 권리) 회원 은 본 법인의 운영과 활 동전반에 참여할 권리와 거친다.	기존 정관에서 일증전 부분 삭제	
3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 의 구성)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 는 본 회의 회고보를 기준 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본 회의 소속에 참여한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 는 본 회의 회고보를 기준 이며 제20조로 규정한 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일증전 부분을 개정 (안)의 일증전 부분으로 대 체	
4 제4장 총회 제20조의 2		제20조의 2(대의원) ① 대의원은 본 법인의 임원과 각 자부별 총회에 선출된자로 한다.		신구

	(대의원)	<p>② 제1항의 조례에 의한 지분별 대리임 계수는 그 통과 같다.</p> <p>1. 서울특별시 10% 2. 광역시 5%, 도농부는 5% 5%</p> <p>③ 세입자 규제에 대한 각 자치법 조례에 규정 자체로 세입자 규제에 선포해 규제수로 정한다.</p>	
5.	제4장 총회 제32조(총회 소집의 조례)	<p>② 총회 소집권자가 결핵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 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대의원 자 20명수 또는 전회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① 총회 소집권자가 결핵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 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대의원 자 20명수 또는 전회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 다</p> <p>기존의 발송전 대의원을 개정 (안)의 대의원으로 대체</p>
6.	제4장 총회 제23조(의결 장특수)	<p>① 총회는 회의 회원과 민족의 출석으로 개회박 수 출석, 투표, 국민수의 선임으로 회복된다.</p>	<p>① 총회는 회의 회원과 민족의 출석으로 개회박 수 출석, 투표, 국민수의 선임으로 회복된다.</p> <p>기존의 발송전 회원을 개정 (안)의 발송전 대의원으로 대 체</p>
7.	제4장 총회 제23조(의결 장특수)	<p>② 총회의 회의권은 총회 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 게 하여금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총회의 회의권은 총회 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 게 하여금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p>기존의 발송전 회원을 개정 (안)의 발송전 대의원으로 대 체</p>
8.	제8장 보회 제42조(발인 장정)	<p>① 본 범인이 해산하고자 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이 찬 성으로 개정하여 해산하 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 후관청에 신고하여야 한 다.</p>	<p>① 본 범인이 해산하고자 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이 찬 성으로 개정하여 해산하 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 후관청에 신고하여야 한 다.</p> <p>기존의 일률전 회원을 개정 (안)의 발송전 대의원으로 대 체</p>
9.	제8장 보회 제42조(장관 변경)	<p>이 장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개정하여 주후관청 의 서약을 받아야 한다</p>	<p>이 장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 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개정하여 주후관 청의 서약을 받아야 한다</p> <p>기존의 일률전 회원을 개정 (안)의 발송전 대의원으로 대 체</p>